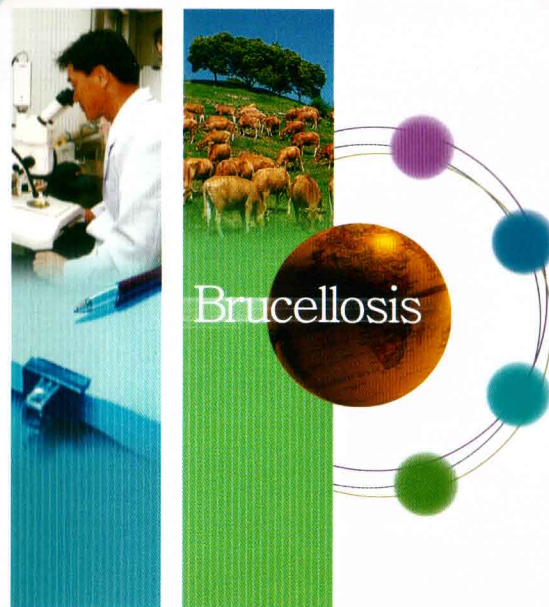


* 효과적인 소독요령

- 소독조
 - 농장 출입구에 설치된 소독조는 차바퀴가, 축사입구에 설치된 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어야 하며, 2~3일 간격으로 소독수를 교환
 - 축사입구 소독조에는 2% 가성소다, 4% 탄산소다, 2% 글루타알데히드 등 유기물에 강한 소독제를 사용
- 차량 및 기자재
 - 물청소 후 바로 소독약을 살포
 - 2% 복합구연산제제, 2% 차아염소산제제 등의 사용 권장, 가성소다 등 강알칼리제제는 부식성이 있으므로 사용금지
- 축사바닥 및 토양
 - 가축이 사육되지 않는 축사바닥이나 토양(도로, 운동장 등)은 2% 가성소다나 생석회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인체에 해로우므로 사용시 주의
 -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축사바닥은 2% 복합구연산제제 등 사용권장
- 분변 등 오물 소독
 - 평상시에는 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축산분뇨처리 요령에 따라 수거, 처리하되 분뇨운반차량과 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
 -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축방역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소독 작업을 해야 하며, 가축방역관의 승인 없이 반출 금지

〈소독제 사용시 주의사항〉

- 대부분의 소독제는 인체에 접촉하면 해로우므로 소독할 때에는 보호 장구를 착용
- 종류가 다른 소독제를 혼합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 동시에 사용금지
- 중화되지 않은 많은 양의 소독약이 농장 외부로 배출되면 환경(수질, 농토 등)에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
- 소독약품은 첨부된 사용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



동물 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

1.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하십시오.
2.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에만 사용하십시오.
3. 사용용량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.
4.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주십시오.
5. 사용방법(투약경로)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.
6.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주사하는 등 중복사용을 하지 마십시오.
7.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하십시오.
8. 휴약기간이 되면 사료통, 축사,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먹이십시오.
9. 동물 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 유지하십시오.
10.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근의 진료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도움을 청하십시오.

전염병 발생 신고 및 문의 >>

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(본소) ☎ 053)326-0012, 0013
 북부지소(안동) ☎ 054)850-3286, 3290
 동부지소(경주) ☎ 054)748-6624, 6682
 서부지소(상주) ☎ 054)530-6745, 674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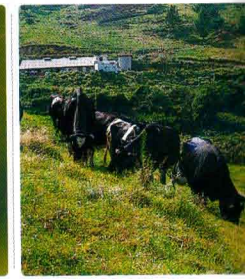
www.gbvet.go.kr

소브루셀라병 근절!!!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

소브루셀라병은 임신 후반기의 유산, 불임증을 일으키며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



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
www.gbvet.go.kr



Brucellosis

소브루셀라병이란?

- 브루셀라균에 의한 소의 전염병으로 유산, 불임 등이 특징적이며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
- 감염개체와의 접촉으로 농장내외 개체 간에 전염되며, 감염개체의 불법적인 판매, 이동 등에 의하여 타 농장에 전파됨
- 한번 발생된 농장은 지속적으로 유산·사산을 일으키므로 예방조치가 중요

주요 임상증상

- 임신 6~8개월령의 초산우에서 주로 유·조산 발생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
- 후산정제, 고환염, 관절염, 감염된 소는 지속적으로 균 배출

전염 및 전파 경로

- 감염(발병) 동물의 유산태아, 유산후산물(태반, 양수 등), 질점액에는 다량의 브루셀라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중요한 오염원 및 전염원
- 오염된 사료, 물, 양수, 우유 등에 의한 경구감염
- 질점막, 결막, 피부의 상처를 통한 피부(점막) 감염 및 감염된 개체와의 교미, 정액에 의한 인공수정으로 전염됨

소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

- 발생농장 재발과 인근농장으로의 전파 및 방역 관리 소홀로 소브루셀라병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축산농가의 책임의식 및 적극적인 예방활동 참여 필요
- 검사체계 보강 및 검사대상 확대('06. 7. 15부터)
 - 소귀표의 규격화 및 채혈요원 일원화 : 방역본부에서 제작한 귀표를 방역요원이 부착 및 채혈 실시
 - 의무검사대상 확대 : 가축시장, 농가 문전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(송아지 포함), 도축장 출하 한육우 암소, 10두 이상 한육우 사육농장
 - ※ 검사증명서 확대('06. 9. 1부터) : 가축시장, 도축장 농가 문전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(송아지 포함)
- 발생농장의 방역관리 강화('06. 7. 15부터)
 - 이동제한 기간 연장(2~3개월 → 6개월 소요) 및 재검사 횟수 확대(2회→3회)/ 이동제한 중 발생농장의 동거소 등 도축장 출하 제한
- 강제 폐기소 보상금의 상한가격 감액 및 평가방식 개선
 - 보상금 상한액 축소(현행 당해 가축시세의 100% → '06. 11. 1부터 당해 가축시세의 80% → '07. 4. 1부터 당해 가축시세의 60%까지 지급)
 - ※ 검사명령·소독·신고 등 방역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보상금 추가 감액 지급

농가의 예방 및 방역 요령

- 농가의 자율적인 차단방역 및 철저한 소독
- 소 구입시 반드시 브루셀라병 비발생농장임을 확인한 후 구입, 입식
- 주기적으로 지역방역기관(가축위생시험소)에 브루셀라병 검사요뢰
- 분만 또는 유·사산 후 배출되는 후산물(태반과 양수 등)은 즉시 매몰 후 철저히 소독
- 후산물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과 장화 및 일회용 방역복을 착용하여 자신을 보호
- 감염 의심축은 신속한 신고 및 긴급방역조치 협조

사람의 브루셀라병

- 사람브루셀라병은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동물과 관계된 특정직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며 국내 전염병예방법상 법정 제3종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
- 잠복기간은 보통 7~21일 정도이나, 병의 증세는 수개월에서 수년간 만성적으로 경과
- 오염된 생유를 마시거나 유산태어나 후산물 및 오염된 물건과 접촉할 경우 상처난 피부를 통하여, 그리고 오염된 비말 등을 흡입함으로써 전염 가능
 - 증상 : 불규칙한 발열, 오한, 쇠약, 불안, 체중감소와 우울증 등
- 예방 : 생우유와 생고기의 식용 금지 및 농장주와 관리인, 수의사, 식육처리자 등은 작업시 보호 장비(장갑, 마스크, 안경 등)를 착용